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수 산 종 자 산 업 육 성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(안 제15조제6호 신설)

- 수중 또는 표층에 뜬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·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

* (현행) 5개(육상수조·육상축제·뱃줄·말목·뗏목) → (확대) 5개+해상가두리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9. ~ 2025. 1. 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: 수중 또는 표층에 뜬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·판매하는 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)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) 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:</u> <u>수중 또는 표층에 뜬·그물 등</u> <u>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</u> <u>하여 수산종자를 생산·판매하</u> <u>는 사업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3